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69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김성원 · 강승규
김선교 · 최수진 · 김승수
박성민 · 유상범 · 정동만
이상희 · 박형수 · 김도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,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재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피해자재산의 정의에 수표·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 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,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).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전은 수표·어음 등 유가증권(이하 “수표등”이라 한다)으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.

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수표등에 대한 공시최고 특례)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등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3조의6(수표등에 대한 지급정지 등)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수표등을 교부한 피해자는 수표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수표등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사기관은 수표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수표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금융회사는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등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표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

금융감독원에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수표등의 소지인은 수표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표등의 지급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의5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
2.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 또는 요청, 제3항에 따른 통지,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종료의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표등의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수표등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용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등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3조의6(수표등에 대한 지급정지 등)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수표등을 교부한 피해자는 수표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수표등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사기관은 수표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수표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금융회사는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등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표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수표등의 소지인은 수표등

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
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
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
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
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
있다.

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 수표등의 지급정
지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
제13조의5에 따른 공시최고절
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1.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지
급정지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
2.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
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경우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
급정지 신청 또는 요청, 제3항
에 따른 통지, 제4항에 따른 이
의제기 및 제5항에 따른 지급
정지 종료의 요건·절차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